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반대의견]

건축과 구조설계는 이원화가 불가능하며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정성 해석으로 건축가의 디자인 구현과 구조도의 합리적 판단으로 인한 작성은 건축사의 역할과 권한입니다.

-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책임은 누가???

- 건축주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상승

- 기타 등등 건설현장 시공사 발주자 그리고 구조기술사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 포함 전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안전사고 요인까지 발생가능성이 커짐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심각한 현장 혼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

5. 이로 인한 건축주의 사회적 비용 상승 등등.....

첨언)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리 발주에 따른 관리감독 역시 건설현장에서 혼란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입법 예고하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고 수반되는 제도 역시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